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0000호
----------	---------

제출년월일 2025. 1. .
제출자 황성석 의원

1. 제안이유

-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른 2025년 1월 1일자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맞추어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범위 수정(안 제2조제2호)
 - “안전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삭제하고 “안전기획관, 홍보기획관, 감사관”으로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붙임 참고
- 나. 조례안 예고기간 : 2025. 02. . ~ 2025. 02. .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부서협의 : 해당없음
 - 2) 관련부서 : 해당없음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담당관**”을 “**안전기획관, 홍보기획관, 감사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범위) 김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장, 국장, <u>담당관</u>, 과장급</p> <p>3. ~ 7. (생략)</p>	<p>제2조 (범위)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안</u> <u>전기획관, 홍보기획관, 감사관</u>----- -----</p> <p>3. ~ 7. (현행과 같음)</p>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28.]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119호, 2024. 2. 28., 일부개정]

경기도 김포시(의회사무국), 031-980-2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2023.2.15.)

제2조(범위) 김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2.15., 2024.2.28.)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 2003.12.30, 2008.1.4., 2023.2.15.)
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신설 2023.2.15.)
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6.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3.2.15.)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김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3